

2026년 1학기 형사판례연구반 지원서

- 고려대학교 형사판례연구반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기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18:30-20:30” 입니다.
- 최종 합격자는 3월 12일 오리엔테이션에 **필참** 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서 작성 후 kucriminalstudy@gmail.com으로 3월 7일 **토요일 23:59**까지 접수해주세요.
- 파일명은 “이름_형판연지원서.docx”, 메일 제목은 “이름_형판연지원서”라고 기재해주세요.
- 면접 대상자는 3월 8일까지, 최종 합격자는 3월 11일까지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입학 연도		학과	
복수/이중/ 융합전공		남은 학기	
		E-mail	
두 학기 연속 활동			
기타			

[면접 시간] *가능한 시간에 “모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월)		3월 10일(화)	
17:20 ~ 17:50		17:20 ~17:50	
18:00 ~ 18:30		18:00 ~ 18:30	
18:40 ~ 19:10		18:40 ~ 19:10	
19:20 ~ 19:50		19:20 ~ 19:50	
20:10 ~ 20:40		20:10 ~ 20:40	
20:50 ~ 21:20		20:50 ~ 21:20	
21:30 ~ 22:00		21:30 ~ 22:00	

【자기소개서】 1, 2번 문항은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 자유롭게 서술 부탁드립니다.

1. 형사판례연구반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 본인이 인상깊었던 법 관련 활동 혹은 관심 있는 법 분야를 소개해주세요.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이주 및 수송을 조직하고 관리한 관료로 홀로코스트 실행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행정관료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의 법률과 명령 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개인적 증오나 잔혹성에 근거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이러한 재판 과정을 직접 참관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악인’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근대 관료제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악을 사유하게 되었다.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통해 진정으로 말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히만의 ‘죄’가 평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인간’이 너무나 평범해서 섬뜩하다는 의미였다. 그가 본 아이히만은 끔찍한 범죄자가 아니라 “끔찍할 만큼 정상적”(terrifyingly normal)인 인물이었다. 아이히만의 핵심 특징은 ‘무사유’(thoughtlessness)였는데, 이는 지능이 낮은 ‘어리석음’(stupidity)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아렌트에게 ‘사유’(think)란 칸트 (Immanuel Kant) 철학에 기대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to think from the standpoint of somebody else), 즉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의미일지 성찰하는 내적 대화(자기와의 대화)를 의미했다. 아이히만에게는 바로 이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상부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료 조직 내 승진에만 몰두했을 뿐, 자신의 서명이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드는 현실은 ‘몰랐다’기 보다 ‘중요하지 않게’(unwichtig) 여겼다. 상투어와 클리셰로 가득한 그의 언어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였고,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극단적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판단이라는 인간의 능력이 제도적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다.

정용숙. (2025). 아이히만 논쟁: 악의 평범성과 비범성 - 베티나 슈탕네트,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이동기 이재규 옮김 (글항아리, 2025) 비평 -. 평화들 PEACES, 4(2), 59-81.

[4]

현행	개정
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u>업무로</u>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6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u>정당한 업무로</u>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필요성 및 의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법령행위 또는 업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현행법 문언에서 확인할 수 없다.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다면 형법이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업무로 인한 행위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비교하여 일정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고로 ‘정당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여,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이천현·윤지영·심승범,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 형법총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3-1 [가] 제시문에서 제시된 ‘무사유(thoughtlessness)’와 ‘어리석음(stupidity)’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구분이 형사책임 감경 논리에서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논하시오. (공백 포함 700자 이내)

3-2 [가] 제시문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나]** 제시문의 형법 제20조 개정안상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아울러 아이히만이 주장한 상부 명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 그의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공백 포함 **800**자 이내)

[3-1, 3-2번 문제의 답안은 이곳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